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003
----------	------

2022. 3. 17.(목)  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22년 3월 8일

다. 회부일자: 2022년 3월 10일

라. 상정일자: 2022년 3월 17일

(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국장 이종수)

### 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인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가 삭제되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

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: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 
→ 「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
- 설치 근거 변경(안 제1조): 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→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 
관리기본법」 제16조
- 기금 명칭 변경: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→ 충청북도  
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
- 기금운용: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 
계정으로 구분함(안 제2조제2항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수석전문위원 서성범)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인 상위법의  
개정과 그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통합  
계정, 재정안정화 계정 구분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 
것임.
- 지난 2019년 제정된 「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 
운용 조례」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.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19. 연도말	2020. 연도말	2021. 연도말
충북교육청	153,000	193,943	260,576

- 조성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세수 변동 등에 따른 재정 불균형 해소  
역할을 하고 교육재정운용의 탄력성 확보는 물론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한  
이·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음.

- 또한, 4차 산업,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,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변동성을 해소하며 코로나19,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등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함.
- 다만, 2021년말 기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안정화 기금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집행계획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금을 운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.
- 본 조례 개정안의 다른 부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수의견요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등) ①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 기금의 여유자금 등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.

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)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(이하 “교육비특별회계”라 한다)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(이하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기금운용 수익금
4. 그 밖의 수익금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

제4조(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) 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
2. 기금운용 수익금
3. 그 밖의 수익금

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기금에 적립할 수 있다.

1.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경우
2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. 다만,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.

1.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중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른 보통교부금과 법 제11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할 경우
2. 대규모 재난·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
3. 지방채상환 또는 임대형민자사업(BTL) 지급금에 충당할 경우
4.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
5. 재정여건상 교육정책사업, 학생 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추진을 위해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경비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 ① 교육감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안정성·수익성을 고려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북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.

제6조(기금의 운용 심의)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기 위하여 충청

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
2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는 「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.

제7조(회계관계공무원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.

1. 기금운용관: 기획국장
2. 분임기금운용관: 예산과장
3. 기금출납원: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

② 제1항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해야 한다.

제8조(관계규정의 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

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.

## □ 지방재정법

제9조의2(회계·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·예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,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"통합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"예수금"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